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의안 번호	1149
----------	------

2019년 11월 26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(2019년 11월 2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실장 황보연)

가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차장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 이용요금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일명 ‘제로페이’)으로 결제하는 경우 10%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하되 현행 부칙에서 “2019년 12월 31일”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“2020년 12월 31일”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- 당초 서울시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 당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시립체육시설 및 인재개발원 등의 이용료를 5~30% 범위 내에서 ‘19년 12월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17개 조례를 제출한 바 있으며, 제290회 정례회에 각 시설에 대한 감면 기한을 ’20년말까지 연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출한 상태임¹⁾
- 동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확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,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정책으로 제로페이 이용 저변확대 및 결제수단 다양화, 시설 이용요금 인하 및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동 조례 개정 이후 서울시가 전체 공영주차장 137개소(노상 72, 노외 65개) 중 60개 공영주차장에 대해 제로페이 이용자의 할인을 월정기권 3%, 시간주차요금 10%로 적용한 결과 9월 1달간의 이용 건수는 228건, 감면액은 570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

1) 행정자치위원회 5건, 기획경제위원회 1건, 환경수자원위원회 2건,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건, 보건복지위원회 5건,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건, 교통위원회 3건

※ 참고 : 제로페이 할인 적용 공영주차장 현황(60개소)

구 분	합계	월정기권 감면(10%)			시간주차요금 감면(3%)		
		계	공단직영	민간위탁 ²⁾	계	공단직영	민간위탁
개소수	60	55	33	22	12	9 (무인 5개소)	3

비고 : 월정기권 및 시간주차요금 모두 감면 시설, 7개소

- 또한 동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9월 이용실적에 따른 1인당 제로페이 평균 이용금액(3,300원) 등을 고려한 ‘20년 한 해 동안의 공영주차장 이용수입 감소액은 13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계되었다는 점에서 할인을 감면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임
- 다만, 제로페이를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현금이나 다른 카드 이용에 비해 결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차장 내 혼잡이 유발될 수 있으며, 현재의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고려할 때 유인주차장 위주로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

2) 민간위탁 주차장의 경우 ‘19.11.1.일부터 민간위탁 계약 체결시 원가조사를 통해 위탁료에 반영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7113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19년 12월 31일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 제7113호, 2019. 5. 2.>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제7조 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<u>2019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 제7113호, 2019. 5. 2.>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----- ----- <u>2020년 12월 31일</u>-----.</p>